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 설치허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,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설치허용지역을 심의함에 있어 상호내용이 유사한 내용중 일부를 삭제함으로서 조문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, 식품집객업에 대한 설치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조례제명을 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 ” 에서 “허용”의 문구를 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 ” 로 변경
- 나. 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 결정의 발표1 내용중 7호내용이 8호, 9호 내용과 상호연결되어 이중규제됨으로 규제해소를 위하여 삭제 (안 발표1의7호)
- 다. 식품집객업의 경우 건축연면적 120㎡ 미만에 한해 허용하고 건축연면적 120㎡ 이상인 경우에는 발표1의 1호내지 6호 규정은 적용하되,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던것을 심의대상에서 제외 (안 제4조 제2항1호)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 ” 를 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 ” 로 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연면적 120 m² 미만의 식품접객업
다만, 건축연면적이 120 m²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7조 제1항 제1호중 “7호 단서규정 내지 9호” 를 “제7호 및 제8호” 로 한다.

별표1중 제7호를 삭제하고 제8호·제9호를 제7호·제8호로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- ③ (폐지규칙) 파주시준농림지역내행위제한지역등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
제명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			제명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		
제4조 (설치허용지역) ① -----			제4조 (설치허용지역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		② (현행과 같음)		
1.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 120㎡미만의 음식점			1. 단일 필지내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 120㎡미만의 식품접객업 다만, 건축연면적이 120㎡이상인 식품접객 업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 외 한다.		
2~4 (생략)			2~4 (현행과 같음)		
제7조 (기능및운영)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	제7조(기능 및 운영) ①-----		
1. 제4조제1항 별표1의7호 단서규정 내지 9호 규정에 의한 허용여부의 심의			1. ----- 제7호 및 제8호 -----.		
2. (생략)			2. (현행과 같음)		
②~③ (생략)			②~③ (현행과 같음)		
【별표1】			【별표1】		
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 결정			구체적인 행위허용지역 결정		
구분	구체적인 허용지역	비고	구분	구체적인 허용지역	비고
1~6.	(생략)		1~6.	(현행과 같음)	
7.주민이 집단 거주하는취락 마을	◦ 기존 자연집단마을 30호(공동주택인 경우 30세대이상)로부터 이격거리 300m이외 지역 다만, 외관상 보이지 않는 지역은 허용		7.	(삭제)	
8.	(생략)		7.	(현행 제8호와 같음)	
9.	(생략)		8.	(현행 제9호와 같음)	